

상주시 공고 제2022-670호

「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13일

상 주 시



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, 인터넷을 전산망을 통한 대형폐기물 수거품목 확대로 주민생활 편의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

2. 주요내용

- 대형폐기물 수거품목 확대 및 수수료 조정
-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동일화
 - 재사용봉투 20ℓ: 100원 → 290원(일반용과 동일화)
- 사업장·공사장, 기타 생활폐기물 수수료 현실화

부과대상	단위	금 액	
		당초	변경
사업장생활계폐기물	톤당 m ³	20,000원	60,000원
공사장생활계폐기물			
기타 생활폐기물			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상주시장(참조 : 환경관리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·시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처 : 우편, 팩스, 전자우편(메일)

1) 주 소: (우)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(환경관리과장)

2) 팩 스: 054-537-6189

3) 이메일: woojh@korea.kr

4) 문의처: 054-537-7366

4. 그 밖의 사항

이 개정조례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(www.sangju.go.kr 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